

#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

2024. 1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감 독 원

# ||| 목 차 |||

I. 검토 배경 .....	1
II.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 .....	3
1. 인가 방식 .....	3
2. 심사 내용 .....	4
3. 예비 인가 .....	6
4. 금융사고 영향 .....	7
III. 향후 계획 .....	7

## I. 검토 배경

-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발표\* ('23.7.5일)

\* "금융당국,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" (보도자료)

※ 현재 대구·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환의사 표명

- 현행법령은 "지방銀 → 시중銀" 전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

- 다만,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환 신청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법령상 근거도 없으며,

- 감독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\*

\* 신규사업자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도 기존사업자(지방은행)에 대해서만 시중은행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

- 합병, 계약이전(P&A)이 아닌 은행의 종류 전환은 과거 사례가 없어 전환방식에 관한 법적근거·절차 등 검토 필요

\* 합병: 하나은행–외환은행('15) / 계약이전: 경기·충청·대동·동남·동화은행('98)

- 한편, 지방은행이 자체적으로 정관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, 이는 부적절한 측면

- 지방은행 영업구역은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, 이를 전국으로 변경시 전환이 가능하다는 해석

- 하지만,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(사후보고)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곤란

→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現 법령체계下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관한 주요쟁점 및 구체적 방안 검토

-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「은행법」(제8조)상 금융위 인가 필요
  - \* (은행법 §8①)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시중은행(전국영업)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도 모두 동일한 조항(제8조)에 따라 인가 받도록 규정
-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인가요건·절차가 대부분 동일하나, 일부 인가요건\* 및 영업구역·방식에서 차이 존재
  - \* 최저자본금: (시중銀) 1,000억원 (지방銀) 250억원 (인터넷銀) 250억원  
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: (시중銀) 4% (지방銀) 15% (인터넷銀) 34%

<표1> 영업구역 및 영업방식에 따른 은행의 종류 구분

영업방식 \ 영업구역	전 국	일부 제한
온 + 오프라인	시중은행	지방은행
온라인	인터넷전문은행	-

- 한편,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 신청이 가능
  - \* (은행법 §11의2①) 제8조에 따른 인가(본인가)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.
- 예비인가제도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려는 취지
  - \* 통상 예비인가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점검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등 통해 본인가 단계 이전 상세히 심사
- 금융위는 예비인가에 조건(통상 인적·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)을 붙이고, 본인가시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

## II.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

### 1. 인가 방식

#### 가. 쟁점 사항 : ①신규인가 vs ②기존 인가내용을 변경

- 은행법 제8조의 인가규정은 신규인가 뿐만 아니라 제8조에 따른 기존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

※ 대법원\* 및 학설\*\*은 처분의 근거규정이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

\* (대법원 2016도1306)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“관리처분 계획의 수립”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

※ 조합원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라 명시

\*\* 처분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변경처분의 근거가 된다. (박균성 저, 행정법 강의)

-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은행법 제8조에 따라 ①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②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

#### 나. 검토·결론 : 인가규정인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

- 인가방식에 따라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처리(폐업인가), 종전 법률관계\*의 승계여부 등이 상이\*\*할 수 있음

\* (사법관계) 대출·예금 등 계약, (공법관계) 경영·부수업무 신고, 제재사유 승계 등

\*\* (예)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를 추진할 경우,

i) 기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폐업처리가 필요하며,

ii)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

-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,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

-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가 불필요하며, 이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

## 2. 심사 내용

### 가. 쟁점 사항 :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 vs 일부요건 심사

- 지방은행의 경우 과거 은행업 인가를 받고 계속 영업중
  -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인가요건은 최저자본금 및 대주주요건 등 일부요건만 차이
    - \* 최저자본금: (시중銀) 1,000억원 (지방銀) 250억원 (인터넷銀) 250억원  
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: (시중銀) 4% (지방銀) 15% (인터넷銀) 34%
  -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인가내용 변경시 과거 심사받았던 요건\*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
    - \*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, 임원 요건, 인력·영업시설·전산설비 요건

### 나. 검토·결론 : 신규인가에 준하여 모든 세부심사요건 심사

- 지방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환은 기존 인가내용의 “중요사항 변경”에 해당
  - 기존 인가와 동일하게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\*을 심사
    - \* 대주주요건,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, 임원요건, 인력·영업시설·전산설비 요건 등

※ (대법원 2011두21485)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특히,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, 내부통제,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을 보다 면밀히 심사
-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\*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
  - \* (은행업감독규정 제7조) 감독원장은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## 참고 2 은행업 인가 세부심사요건

	세 부 심 사 요 건	확인서류
<b>자본금 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</li> <li>○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본금 납입 확약서 등</li> </ul>
<b>대주주 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실금융기관 관련 책임이 없을 것</li> <li>○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상 소유규제에 적합할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</li> </ul>
<b>사업계획 타당성 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영전략 및 수익전망이 적정할 것</li> <li>○ 경영지도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</li> <li>○ 이사회 및 경영지배구조가 적정할 것</li> <li>○ 내부통제,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적정할 것</li> <li>○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</li> </ul>
<b>임원 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법상 임원자격 요건에 부합할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</li> <li>-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 사실 조회 회보서</li> </ul>
<b>인력·영업시설· 전산설비 요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가신청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력 (전문인력 포함)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</li> <li>○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 시설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</li> <li>○ 은행업 영위를 위한 적정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</li> </ul>

### 3. 예비인가

#### 가. 쟁점 사항 : 예비인가 필요 vs 불필요

-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, 통상적인 은행업 인가 절차의 경우 본인가 전 예비인가 진행

\* (은행법 §11의2①) 제8조에 따른 인가(본인가)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- 다만, 지방은행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예비인가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(본인가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전제)
  - 이미 인적·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시 예비인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

#### 나. 검토·결론 : 예비인가 생략 가능 (단, 신청인 희망시 진행)

-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
  -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, 일정요건\*을 충족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가 생략 가능

\* 대주주, 자본금, 기타 인적·물적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

-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전체 심사기한\*은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

\* 은행업감독규정(제5조제5항)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3개월이며, 예비인가(제5조제14항에 따라 심사기한 2개월)를 받은 경우는 1개월로 명시

- 단, 신청인이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생략없이 진행

## 4. 금융사고 영향

### 가. 쟁점 사항 : 심사중단사유, 대주주 또는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

-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검사·조사를 진행중(제재확정 전)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,
  - ①심사중단사유, ②대주주 또는 ③임원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# 나. 검토·결론 : 인가심사 진행 가능

- 금융사고가 “주주”가 아닌 “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”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 가능
  - ① 은행업감독규정은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“주주” 관련 형사소송, 조사·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
  - ②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므로 대주주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  - ③ 임원의 경우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- 단,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내용의 변경시점과 제재시점의 先後에 따라 제재 관련 임원의 법률적 지위가 상이할 수 있는 바,
  - \* (예) i) 변경 이후 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확정시 → 잔여 임기까지 직위 유지 가능
  - ii)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 제재확정 후 인가 신청시 → 해당 임원은 인가심사시 결격사유에 해당

- 인가신청시 관련서류로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사

※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세부심사요건 중 **‘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’** 관련 사항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

## III. 향후 계획

-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위한 인가 신청시 해당 절차로 진행
- 추후 은행법 개정 통해 은행업 종류의 전환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

은행법

**제8조(은행업의 인가)**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. 다만,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2.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
3.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,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
4.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5.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6. 발기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적합할 것
7.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
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,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,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.

**제9조(최저자본금)**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신청서 등의 제출)** ①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1조의2(예비인가)** ① 제8조에 따른 인가(이하 이 조에서 "본인가"라 한다)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

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.

## 은행법 시행령

**제1조의7(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)**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
2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
3.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
4.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

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 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
2.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  - 가.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
  - 나.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
  - 다. 정전,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할 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)**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상호
2.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
3. 발기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임원에 관한 사항
4.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6.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
7. 주주구성계획
8.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정관
  2.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
  3. 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
  4. 발기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
  5.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,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)
  6.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(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) 및 예상 수지계산서
  7.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8.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,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  9.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(이하 “예비인가”라 한다)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  10.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- ③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**제3조의2(예비인가)**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상호
  2.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
  3. 발기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임원에 관한 사항
  4.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
  5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6.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
  7. 주주구성계획
  8.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정관이나 정관안

2.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
3. 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
4. 발기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
5.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,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)
6.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(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) 및 예상 수지계산서
7.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(채용,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8.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,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
9. 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## 은행업감독규정

- 제5조(은행업의 인가)** ①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인가신청서 및 <별표 2-6>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영 제1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<별표2-2>와 같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,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8조, 영 제1조의7제3항 및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야 한다.
- ⑤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(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) 이내에 은행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,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1.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
  2.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서 흡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
  3.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자의 주주(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. 다만,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)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,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(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·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)
- ⑦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,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도록 하고, 인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⑧ 금융위가 은행업을 인가할 때 영 제1조의7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다.
- ⑨ 금융위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, 신청일자, 신청내용,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⑩ 금융위는 제9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,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⑪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⑫ 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받은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.
- ⑬ 법 제11조의2에 따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 및 <별표 2-6>에 따른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⑭ 금융위가 제13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, 금융위는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흡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⑮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인가"는 "예비인가"로 본다.

⑯ 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신청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⑰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에게 <별지 3>의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, 은행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<별지 4>의 은행업 경영인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1. 은행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인가 사실
2.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
3.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

####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

**제5조(은행업의 인가신청)** 규정 제5조제1항, 제13항 및 제16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.